中國의 民事裁判機關과 그 構成員에 관한 고찰

孫漢琦*

Ⅰ. 序 言

작년 8월 우리와 中國이 修交함으로써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은 이제 우리의 이웃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여러제도에 관한 關心이 高潮되고 있으며, 법률제도에 관한 관심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으나 아직은 初步的인 단계이다. 중국이 사회주의화한 후 초기에는 활발한 法制建設作業이 진행되어 1951년 9월에 「中華人民共和國人民法院暫行組織條例」가 제정되어 1차로 全國의 法院組織과 裁判原則의 통일을 기한 바가 있고 1954년에는 「中華人民共和國法」과 「中華人民共和國人民法院組織法」이 정식으로 制定公布되어 재판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1966년에 시작되어 10년간 계속된 文化革命期間에는 전국의 인민법원의 재판업무가 마비되고 인민검찰원이 폐지되는 등 極甚한 混亂狀態가 전개되어 입법작업과 재판업무는 일대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 후 四人幇이 沒落한 1976년부터는 폐지되었던 제도의 복구가 시작되었고 1979년 부터는 본격적인 法律制度의 整備와 立法作業에 착수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改革開放의 물결이 일

* 嶺南大學校 法科大學 專任講師.

1) 最近 中國法制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하는 대표적인 機關으로는 法務部의 國際法務審議官室과 法制處 傘下機인 韓國法制硏究院이 있다. 前者에서는 「中國法硏究」의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어며, 後者도 「中國民法通則」 등 주제별로 연구을 刊行하고 있다.

2) 이러한 過程은 Huang Huikang, Introduction to Chinas Law & Politics, Wuhan, China, Wuhan University Press, 1990, pp.158 이하에 연대별로 정리되어 있다.

3) 中華人民共和國憲法 제124조, 中華人民共和國人民法院組織法 제2조.

자 서구의 법제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고 입법작업은 改革開放의 深化와 더불어 加速度을 얻게되어 최근에는 가히 法律의 洪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법률 각분야의 制改正作業이 눈부시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修交가 日淺하고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운 사정과 자료를 解得할 수 있는 人的資源의 부족으로 인하여 거대한 이웃나라의 변화에 充分히 注意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本稿에서는 중국의 裁判制度를 살피기 위한 基礎作業으로 우선 중국의 法院의 체계, 審級制度, 裁判組織, 法官 其他의 人的 構成員과 辯護士制度에 관하여 民事訴訟分野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피고자 한다.

II 중국의 法院體系

중국의 법원은 最高人民法院과 地方各級人民法院 및 專門人民法院으로 나뉘어진다. 이 중 地方各級人民法院은 다시 基層人民法院, 中級人民法院 및 高級人民法院으로 나뉘어진다. 이하에서 각종 法院의 설치와 구성 및 그 權限을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1 基層人民法院

(1) 設置와 構成

基層人民法院은 가장 기초가 되는 하급법원으로 縣, 自治縣市 및 市割區(대도시에 區를 둔 경우)에 설치된 人民法院이다.[4] 중국 전역에 설치된 基層人民法院의 수는 1990.12.31 현재 北京의 24개등을 포함하여 3013개(專門法院 포함)이다.[5]

基層人民法院은 院長 1인, 副院長 1인과 약간명의 판사(審判員)로 구성된다. 여

4) 上記 法院組織法 제18조.
5) 각 지방별 基層人民法院의 수에 관하여는 「中國法律年鑑(1991)」, 北京, 中國法律年鑑社, 1991, 938면 參照.

기에 刑事裁判庭, 民事裁判庭 및 經濟裁判庭을 설치할 수 있으며 庭에 는 庭長과 副庭長을 둔다. 또한 사건의 정확 신속한 처리와 인민군중의 편리를 위하여 基層人民法院은 지역, 인구와 사건발생 상황에 따라 그 派出所格인 人民法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基層人民法院의 한 구성부분으로 여기서 한 判決과 裁定은 基層人民法院의 判決, 裁定으로 된다.[6] 중국전역에 설치된 人民法庭은 1990.12.31 현재 대략 18,300개 이다.[7]

(2) 職務權限

基層人民法院은 第1審의 刑事, 民事事件을 재판한다. 다만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건은 제외한다(法院組織法 제21조 제1항). 그러나 基層人民法院은 자기가 수리한 사건의 정황이 중대하여 上級法院이 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上級法院에 이송하여 재판할 것을 申請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재판사건 이외에도 基層人民法院은 (가) 재판을 요하지 않는 민사분쟁 및 輕微한 형사사건, (나) 人民調解委員會의 職務의 指導와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2. 中級人民法院

(1) 設置와 構成

中級人民法院은 基層人民法院과 高級人民法院의 중간에 위치하는 재판기관이다. 法院組織法 제23조에 의하면 (가) 省, 自治區에 지역에 따라 설치된 中級人民法院, (나) 直轄市에 설립된 中級人民法院, (다) 省, 自治區의 割市에 설치된 中級人民法院, (다) 自治州의 中級人民法院 등의 中級人民法院이 있다. 그 수는 1990.12.31 현재 377개(專門法院 포함)가 있다.[8]

中級人民法院은 院長1인, 副院長, 庭長, 副庭長 및 약간 명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

6) 法院組織法 제19조, 제20조. 人民法庭의 직무는 (가) 一般民事事件 및 輕微한 刑事事件의 재판, (나) 人民調解委員會의 指導, (다) 政策, 法律, 法令의 宣傳등이다(韓曉武,「中華人民共和國國家機構概況」, 北京, 新華書店, 1989, 97面.

7) 前揭, 法律年鑑 同面.

8) 前揭 法律年鑑, 同面.

또한 그 안에 刑事裁判庭, 民事裁判庭 및 經濟裁判庭을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기타 裁判庭을 설치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2) 職務權限

中級人民法院은 다음의 사건을 재판한다(제25조 제1항).

(가) 法律, 法令이 그 관할로 규정한 第1審 事件.

(나) 基層人民法院이 재판을 移送한 第1審 事件.

(다) 基層人民法院의 判決 및 裁定에 대한 상소사건 및 항소사건.

(라) 人民檢察院이 裁判監督節次에 따라 제기한 抗訴事件.

中級人民法院은 자기가 수리한 사건이 중대하여 上級人民法院이 재판함이 마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급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高級人民法院

(1) 設置 및 構成

高級人民法院은 中級人民法院과 最高人民法院의 중간에 위치하는 재판기관이다. 이는 省, 自治區, 直轄市에만 설치되며(제26조) 그 수는 1990. 12. 31 현재 31개이다.[9]

中級人民法院과 마찬가지로 高級人民法院도 院長1인, 副院長, 庭長, 副庭長 및 약간명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여기에 刑事裁判庭, 民事裁判庭 및 經濟裁判庭을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기타 재판정도 설치할 수 있다(제27조).

(2) 職務權限

高級人民法院은 다음의 사건을 재판한다.

(가) 法律, 法令이 그 관할로 규정한 第1審 事件.

(나) 下級人民法院이 재판을 이송한 第1審 事件.

(다) 下級人民法院의 判決 및 裁定에 대한 상소사건 및 항소사건.

(라) 人民檢察院이 裁判監督節次에 따라 제기한 抗訴事件.

4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은 中國의 최고재판기관이며(제30조 제1항), 地方各級人民法院 및 專門人民法院의 재판사무를 감독한다(동조 제2항). 最高人民法院이 내린 1심 혹은 2심의 판결(裁定포함)은 모두 終審判決(裁定)이다.

最高人民法院은 院長1인, 副院長, 庭長, 副庭長 및 약간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제31조 제1항), 여기에는 刑事裁判庭, 民事裁判庭 및 經濟裁判庭이 설치되며, 기타 필요한 재판정을 설치한다(동조 제2항).[10]

最高人民法院은 다음의 사건을 재판한다(제32조).

(1) 法律, 法令이 그 관할로 정하는 第1審사건과 스스로 재판해야 할 것으로 인정하는 第1審사건.

(2) 高級人民法院 및 專門人民法院의 判決 및 裁定에 대한 上訴事件 및 抗訴事件.

(3) 最高人民檢察院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제기하는 抗訴事件.

또한 最高人民法院은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법률, 명령을 구체적으로 應用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해석을 한다(제33조).

5 專門人民法院

專門人民法院은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사건만을 專門的으로 처리하는 재판기관으로 현재 중국의 專門法院으로 중요한 것은 軍事法院 등이 있다. 군사법원 이외에도 舊法院組織法 제2조 제3항에는 鐵路運輸法院, 水上運輸法院, 森林法院 등

9) 上揭 法律年鑑, 同面.

10) 예컨대 林彪등 "四人幇" 反革命集團의 主犯 10명을 재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特別法庭은 刑事裁判庭, 民事裁判廷 및 經濟裁判庭 이외의 一種의 裁判庭이다(韓曉武, 前揭書, 89面).

의 專門法院이 例示되어 있었으나 1983년의 개정으로 이를 삭제하였다. 이 專門法院의 구성과 직무범위는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가 별도로 정한다(제29조).

專門人民法院과 普通人民法院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그 설치가 예컨대 軍事系統과 같이 특정의 조직계통에 따라 이루어지며 行政區劃에 따라 설치되지 않는다. 둘째로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당해 조직계통의 事務중 발생하는 사건이며 일반적인 민사, 형사사건이 아니다. 이러한 사건은 專門的 業務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주 전문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特殊性에도 불구하고 專門法院은 보통법원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法院組織法이 규정하는 基本原則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두 最高人民法院의 통일적인 감독하에 재판사무를 처리한다.

III 審級制度(2審終審制)

(1) 중국의 審級制度는 다른나라의 소송제도와 달리 독특한 審級制度를 가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는 3심제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民事, 刑事裁判을 불문하고 2審終審制(兩審終審制)를 채택하고 있다. 法院組織法 제12조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재판하는 때에는 2審終審制를 실시한다(1항). 地方各級人民法院의 第1審사건에 대한 판결 및 裁定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上一級 人民法院에 상소할 수 있고, 人民檢察院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上一級 人民法院에 抗訴할 수 있다(2항)」라고 하고, 同條 제4항에서는 「中級人民法院, 高級人民法院 및 最高人民法院이 재판한 第2審事件의 判決 및 裁定과 最高人民法院이 재판한 第1審事件의 判決 및 裁定은 모두 종심적 判決 및 裁定이며 法律的效力이 발생하는 判決 및 裁定이다」라고 하여 2審終審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2) 이를 받아 민사소송법 제158조는 「第2審 인민법원의 判決, 裁定은 終審的 判決, 裁定이다」라고 규정하여 민사소송에 이 원칙이 적용됨을 확실히 하고 있으며, 刑事訴訟法 제143조도 「第2審의 判決 및 裁定과 最高人民法院의 판결, 裁定은 모두 종심적 판결, 裁定이다」라고 하여 역시 2審終審制를 채택하고 있다.[11][12]

(3) 이와 같이 2審終審制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두심급의 재판을 거치면 확정된다. 따라서 地方各級人民法院의 第1審 判決 및 裁定에 대하여 당사자가 不服하는 경우에는 法定上訴期間內에 上一級 人民法院에 上訴하여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人民檢察院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일급 인민법원에 抗訴할 수 있다.[13] 이때 上級法院이 내린 第2審 判決 및 裁定은 종심적인 것으로 이에 대하여 다시 不服할 수 없다. 敷衍한다면 基層人民法院이 내린 第1審 判決 및 裁定에 대한 불복은 中級人民法院을 그 終審으로 하고, 中級人民法院이 第1審法院이었던 사건은 高級人民法院을 그 終審으로 하며, 高級人民法院이 第1審法院이었던 사건은 最高人民法院에 이르러 終審되게 된다. 그러나 最高人民法院이 第1審법원으로 내린 判決, 裁定은 언제나 종심적인 것으로 不服할 수 없다.

(4) 중국이 이와 같이 2審終審制를 採擇한 것은 수십년간의 司法實踐에 의하면 兩審終審制가 사건을 적시에 정확히 처리하는데 유리하고 국가, 집체 및 개인의 권익보호에 유익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사정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14]

---

11) 다만 刑事訴訟에 있어서의 上訴審構造는 同法 제134조에 따라 覆審主義的 構造를 가지고 있음이 注目된다. 즉 同條 제1항은 「제2심법원은 제1심이 認定한 事實 및 適用法律에 대하여 全面的으로 審査하여야 하며, 上訴 혹은 抗訴範圍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同法 제144조는 「死刑은 最高人民法院이 審査比準(核准)한다」라고 하여 死刑覆核主義를 실시하여 3審까지 許容하고 있다.

12) 刑事訴訟의 2審終審制에 관하여는 樊崇義 主編, 「中國刑事訴訟法」,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1, 55-57면 참조.

13) 人民檢察院의 民事訴訟 干與에 관하여는 孫漢琦, 「中國法研究(III) -民事訴訟法-」, 法務部 法務資料 제161집(1992), 286면 이하 참조.

14) 韓曉武, 前揭書, 97面.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같이 2審終審制를 취한 결과 중국에는 우리의 上告, 抗告, 再抗告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上訴審의 용어가 우리와는 달리 사용된다. 즉 중국에서는 당사자가 불복하는 것은 判決에 대한 것이든 裁定(우리의 決定)에 대한 것이든 모두 「上訴」라 한다.[15] 왜냐하면 우리의 「上訴」라는 용어와 같은 2審(抗訴)과 3審(上告)을 包括하는 용어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抗訴」라는 용어는 언제나 人民檢察院의 不服手段을 의미하게 된다. 즉 人民檢察院이 人民法院의 判決, 裁定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을 抗訴라 한다.[16] 따라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抗訴」[17]는 人民檢察院이 裁判監督節次에 따라 人民法院이 한 判決, 裁定에 불복하는 것을 말한다(민소법 제185조). 또한 이와 같이 재판의 종류(判決, 裁定)에 따라 구별을 두지 않으므로 우리의 抗告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IV 裁判組織(狹義의 法院)

중국의 裁判機關도 역시 合議部(合議庭)와 單獨判事(獨任制)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으로는 疑難事件(어려운 사건)의 취급등을 위한 裁判委員會制度가 있다. 그리고 各級 法院長은 各級 人民代表大會에서 선거하고 있으며 副院長, 庭長, 副庭長은 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에서 任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 合議制와 獨任制

法院組織法 제10조에 따라 중국의 재판기관은 合議制와 獨任制로 구분된다. 이

15) 法院組織法 제12조 제2항은 「... 當事人可以按照法律規定的程序向上一級人民法院上訴 ...」라고 한다.
16) 法院組織法 제12조 2항은 「... 人民檢察院可以按照法律規定的程序向上一級人民法院抗訴 ..」라고 하고있다.
17) 「中華實用法學大辭典」(吉林: 吉林大學出版社, 1988), 844面.

에 따라 민사소송법도 제40조 이하에서 合議制와 獨任制의 재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集體的인 裁判制度를 합의제라고 하고 법관 1인이 재판하는 것을 獨任制라 한다. 그러나 合議庭의 구성은 우리와 매우 다르다.

(1) 合議制

합의제라 함은 合議庭[18]을 구성하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민법원이 第1審 民事事件을 재판하는 경우는 簡易節次(제142조 이하)를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合議庭을 구성하여 재판하며, 제2심 및 再審의 경우는 언제나 合議庭에서 재판한다.

가) 合議庭의 구성

(i) 合議庭의 구성은 審級에 따라 다르다. 즉 第1審의 合議庭은 법관과 배심원으로 구성하거나 法官만으로 구성한다(민소법 제40조 제1항). 그러나 第2審의 경우에는 오로지 法官으로만 구성하며 陪審制를 시행하지 아니한다(민소법 제41조 제1항). 또한 還送事件은 원심인민법원이 第1審節次에 따라 별도로 合議庭을 구성하며(同條 제2항), 再審事件은 原判決이 第1審의 것인 경우에는 第1審節次에 따라 合議庭을 구성하며(法官과 陪審員으로 혹은 法官만으로), 原判決이 제2심의 것이거나 上級人民法院의 것인 때에는 第2審절차에 따라(法官만으로) 合議庭을 구성하여 재판한다(同條 제3항).

合議庭의 構成員 수는 제한이 없으나 언제나 홀수이어야 한다(제40조 1항 제2문). 實務上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기도 한다고 한다.[19] 그리고 合庭의 裁判長(審判長)은 院長 또는 庭長[20]이 지정하는 1인의 법관이 담당하며, 院長이나 庭長이 재판

18) 庭이라는 글자는 우리의 部로 고쳐 읽으면 便利한 경우가 많다. 여기의 合議庭도 우리의 合議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며, 旣述한(위 Ⅰ 참조) 民事裁判庭, 刑事裁判庭, 庭長, 副庭長 등의 庭도 部로 읽어도 無妨할 듯하다. 그러나 이를 廷으로 읽어야 할 경우도 많다는 점을 注意하여야한다. 예컨대 基層人民法院의 派出所格인 人民法庭(상기 Ⅰ1 (1) 참조), 제100조 이하의 法庭, 제120조 이하의 開庭내지 開庭審理의 庭은 廷으로 읽어야 한다.

19) 王懷安 等編, 「中國民事訴訟法教程」, 北京, 人民法院出版社, 1988, 69面.

20) 여기의 庭長은 民事裁判庭의 庭長을 말하며 合議庭의 長은 審判長이라고 한다(民訴法 제42조: 前揭 「中華實用法學大辭典」, 1166面).

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院長 혹은 庭長이 담당한다(제42조)

(ii) 중국의 裁判制度에는 전통적으로 陪審制度가 채택되어 왔다.[21]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특질상 人民大衆이 國家管理에 참가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심원의 참가는 특히 技術性, 專門性이 비교적 강한 사건에 현저하며, 이들은 정확한 사실인정과 당사자의 說服敎育에 적극적으로 작용한다고 한다.[22] 그러나 근래 이 陪審制에 대하여는 중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우선 民事事件이나 經濟事件의 심판에는 고도의 專門性이 요구되며 법률지식과 재판업무에 정통해야 하는데 陪審員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재판시 陪席하나 審理하지 못하고(只陪不審), 法官이 그들에게 事件의 情況을 설명해 주어야 할 뿐 아니라 法律講義까지 해주어야 하는 폐단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개혁이후 배심원을 구하기가 힘들고 經費問題도 해결하기 힘들게 되었다 한다.[23] 그래서 비교적 近者에 제정된 民事訴訟法에서는 배심원의 合議庭參加를 第1審에 한하여 任意的인 것으로 하고 있다(제40조 제1항).

(iii) 合議庭이 재판하는 경우에는 다수결 원칙(少數服從多數的原則)에 의한다(제43조 제1문). 또한 合議庭의 일체의 활동은 특히 사건처리의 최후평의를 포함하여 서기가 調書로 작성한다. 評議에 관하여는 소수의견(不同意見), 評議結果를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調書에는 合議庭構成員이 署名하며, 合議庭調書를 자세히 심사한 후 중요상황과 의견이 脫漏 또는 誤記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補正을 요구하여야 한다.

(2) 獨任制

獨任制라함은 合議制에 대하는 것으로 1인의 법관이 사건을 單獨裁判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민사소송에 있어서는 合議制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만 獨任

21) 刑事訴訟에 있어서의 陪審制에 관하여는 前揭, 「中國刑事訴訟法」, 60-63면 參照.

22) 參政權이 剝奪되지 않은 滿23歲 이상의 公民중에서 선출되며 이들은 合議庭에 참가하는 동안 法官과 동일한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따라서 訴訟資料를 閱覽하고 當事者, 證人, 鑑定人 등을 訊問하며 事件의 評議에 참가하며 判決書에 署名을 한다(前揭 法學大辭典, 38面).

23) 前揭 「敎程」, 89面.

制를 시행하고 있다. 舊法 제35조 제2항은 「간단한 民事事件은 법관 1인이 單獨으로 裁判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개정법 제40조 제2항은 「簡易節次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법관 1인이 단독으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舊法下에서는 중대하고 복잡한 疑難事件 이외에는 널리 獨任制를 실시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었으나 改正法에서는 명문으로 제142조 이하의 簡易節次가 적용되는 사건에 한하여 독임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45조).

따라서 獨任制의 범위는 基層人民法院 및 그 派出法庭[24]이 심리하는 사건에 한정되며,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여 다툼이 심하지 않은(爭議不大的) 간단한 사건에 한정된다(제142조). 따라서 中級人民法院 이상의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이거나 疑難事件등은 獨任制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2. 院長, 庭長과 合議庭 및 獨任法官의 관계[25]

중국 憲法 제126조와 法院組織法 제4조는 「人民法院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립하여 裁判權을 행사하고 行政機關, 社會團體 및 個人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재판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26] 그런데 이 조항은 우리 헌법 제103조와는 다르다. 즉 우리 헌법 제103조는 「法官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法官의 獨立을 선언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人民法院의 獨立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각종 소송에 있어서 法院長, 庭長과 合議庭 및 獨任法官의 관계에서 우리와는 매우 判異한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우리 法制에서는 사법행정에

---

24) 基層人民法院의 派出法庭은 「人民法庭」을 말한다(上述 II 1 (1) 참조).

25) 各級 人民法院의 院長은 各級人民代表大會가 選擧하며 그 任期는 선거한 各級人民代表大會의 任期와 같다(法院組織法 제35조, 36조). 副院長, 庭長, 副庭長 및 法官은 各級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가 任免한다(同法 35조).

26) 改正前의 中華人民共和國人民法院組織法 제4조에는 「人民法院은 독립하여 재판을 하며 다만 法律에 복종한다(人民法院獨立進行審判, 只服從法律)」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참고로 中國의 法院組織法은 1979. 7. 1. 제5기 全國人民代表大會 제2차회의에서 통과되어 1980.1.1. 부로 시행되고 있으며, 1983년 9월 2일 제6기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제2차회의에서 한차례 重大한 改正을 하였다. 이는 中國의 82년 憲法에 맞추어 法院組織法을 개정한 것이며 82憲法 제126조에는 改正法 제4조의 內容과 똑같은 규정이 있다. 本稿에 引用된 것은 이 改正本이다.

관한 사항 이외에는 법원장 등이 재판기관(狹義의 法院)의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鐵則이나, 중국에서는 院長등에게 재판의 감독에 관한 강력한 權限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 民事訴訟法 제177조 제1항은 「각급 인민법원장은 이미 法律的效力이 발생한 當該法院의 判決, 裁定에 錯誤가 있음이 확실한 것을 발견하여 再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裁判委員會에 回附하여 토론결정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자기 法院의 裁判監督權을 부여하고 있다.[27] 따라서 院長, 庭長은 合議庭과 獨任法官의 사건처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들의 사건처리에 관한 意見을 청취하여야 한다. 만약 合議庭과 獨任法官의 사실인정과 法律適用에 錯誤가 있음이 확실한 것을 안 때에는 즉시 補充調査 또는 새로 評議를 하라는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合議庭과 獨任法官이 자기의견을 固執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裁判委員會에 넘겨 토론결정하게 하여야 한다. 合議庭 또는 獨任法官은 裁判委員會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院長 등과 合議庭, 獨任法官의 독특한 관계를 領導와 被領導의 關係(領導與被領導的關係)라고 부른다.[28]

3 裁判委員會(審判委員會)

(1) 意義와 構成

법원조직법 제11조는 「各級人民法院은 裁判委員會를 설립하여 民主集中制를 실행한다」라고 하여 모든 人民法院에 裁判委員會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의 모든 법원에는 裁判委員會가 常設되어 일정한 사건을 처리하고 재판연구 등을 하게 된다.

지방각급 인민법원 裁判委員會의 委員은 院長의 제청으로 해당급의 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가 任免하며, 最高人民法院 裁判委員會의 위원은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가 任免한다(同條 제3항).

---

27) 孫漢琦, 前揭書, 286면 이하의 裁判監督節次 參照.
28) 前揭「教程」, 71面.

(2) 法的性質과 임무

裁判委員會의 法的性質은 법원의 행정기구가 아니고 일종의 재판기구이다. 그러나 合議庭이나 獨任法官과 같이 순연히 재판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연구도 하는 복합적 기능을 가진 독특한 기관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에서는 이를 우리의 裁判硏究官(법원조직법 제24조)이나 法院調査官(동법 제54조)의 기능을 兼有하는 裁判機關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29] 그러나 同委員會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提請에 따라 決定을 하면 이 결정에 따라 合議庭 등이 裁判을 하는 점에서 決定權을 가진 高次元의 常設的 諮問委員會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裁判委員會의 임무로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가) 重大하거나 어려운 사건(疑難事件)을 討論하여 결정을 내린다.[30]

무엇이 중대한 사건이고 疑難事件이냐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管轄區域에, 또는 全國的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涉外的事件과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31] 이러한 사건은 모두 裁判委員會에 제청하여 그 토론결정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나) 各級 法院長이 裁判監督節次에 따라 裁判委員會에 回附한 사건(민소법 제177조 제1항).

전술한 바와 같이 법원장은 자기 법원에서 내린 判決, 裁定에 착오가 있음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裁判委員會에 토론결정을 희부할 수 있다.

(다) 裁判實務經驗의 綜合(법원조직법 제11조 제1항).

---

29) 前揭 {教程}, 73面.

30) 審判委員會의 判斷의 形式은 決定이다(民訴法 제177조 제1항). 이것은 事件에 대한 直接的인 裁判이 아니라 合議庭이나 獨任法官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事實認定과 法律適用에 관한 일종의 解釋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決定에 대하여 合議庭이 不服하는 경우에는 院長에 대하여 復議를 提請할 수 있으며, 上級人民法院의 審判委員會에 判斷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窮極的으로는 審判委員會의 決定에 따라야 한다(前揭「教程」,73面). 이와 같이 審判委員會의 判斷形式 또는 院長이나 재판장의 단독적 재판의 형식을 決定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法院의 裁判을 우리식으로 判決, 決定으로 換讀할 수 없어서 本稿에서는 중국에서 부르는 대로 判決, 裁定(우리의 決定)으로 부르기로 한다. 判決, 裁定 및 決定에 관하여는 孫漢琦, 前揭書 제3편 제7장 참조.

31) 前揭「教程」, 72面.

裁判委員會는 법률의 정확한 적용에 관한 각급법원의 경험, 재판실무 및 직무태도에 관한 경험, 典型的事件의 取扱 등을 종합하여 재판관계자의 사법수준을 提高하고 裁判事務를 指導하는데 이용하게 한다.

(라) 裁判事務에 관한 기타 문제의 연구(법원조직법 제11조 제1항).

最高人民法院의 裁判委員會는 재판과정중 법률, 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해석을 한다.

(3) 審判活動

各級法院의 裁判委員會의 회의는 院長이 주재하며, 當該 法院에 상응하는 人民檢察院의 檢察長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法院組織法 제11조 제3한). 또한 評決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

V 法官과 기타 裁判關與人

1 法官(審判員)

(1) 法官의 자격

중국의 법관제도는 各級法院의 院長, 副院長, 庭長, 副庭長과 각급 법원의 法官(審判員)으로 구성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원조직법 제34조가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選擧權과 被選擧權이 있고 만23세에 달한 公民으로 참정권이 박탈되지 않는 자는 인민법원의 院長으로 被選되거나副院長, 庭長, 副庭長, 法官(審判員), 補助法官(助理法官)에 임명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법원조직법 제42조와 같은 임용자격의 제한은 없다. 다만 1883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제34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人民法院의 裁判關與人(審判人員)[32]은 반드시 專門的인 法律知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라고 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32) 審判人員은 法官, 補助法官 과 陪審員을 포함하는 말로 쓰인다.

이렇게 법관의 자격요건이 느슨한 것은 무엇보다도 需要에 비해 전문적인 法律知識을 가진 사람이 부족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회주의 중국이 건설된 후로 부터 1978년 까지 法律學과 政治學의 학사학위를 가진자의 수가 놀랍게도 19,000명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 기간동안 법원에서 활동한 干部要員중 대학과 대학교의 졸업생은 3.6%에 불과 하였다. 인민검찰원과 사법행정기관에 이르러서는 법률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의 수는 더욱 적어지게 된다.[33] 더구나 文化革命期에는 政法大學이 폐교되었고 모든 종합대학의 法學科가 7,8년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였다. 현재에는 많이 복구되어 폐교되었던 학교가 다시 열리고 政治法律 계통을 공부하는 학생수가 20,000 명을 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需要에 비해 적은 편이다.[34]

또한 三權分立 보다는 人民代表大會와 共産黨에의 權力集中에 익숙한 중국의 정치관행도 법관의 資格要件을 법률적지식의 구비여부에 치중하는 것을 방해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共産化를 위한 革命期 중에는 모든 재판에 黨의 委員會가 간여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1979년 9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黨에 의한 裁判의 審査와 承認制度를 폐지할 것을 선언하기 까지 계속되었다.[35]더구나 1966년 부터 시작된 文化革命期에는 모든 법원의 기능이 마비되었고 심지어 人民檢察院制度는 폐지되기도 하였다.[36] 이러한 풍토에서 餘他國에서 通用되는 自足的인

33) Huang Huikang, op.cit. pp.168-170.

34) 1990년 12월 현재 全中國 法院의 裁判關係者의 統計는 다음과 같다.

單位: 名

項目 / 職別	總數	性別		民族	
		男	女	漢族	少數民族
院長	3,336	3,258	78	2,781	565
副院長	7,480	6,956	524	6,723	757
正副庭長	42,685	40,383	2,302	38,976	3,709
審判員	35,613	30,629	4,984	32,683	2,930
助理審判員	42,346	33,667	8,679	38,476	3,870
書記員	50,965	36,069	14,896	45,387	5,578
法警	12,411	11,659	572	11,139	1,272
合計	194,836	162,621	32,215	176,165	18,671

1991 中國法律年鑑, 939面

35) Huang Huikang, op.cit. p.167.

法官像의 定立이 어려웠을 것은 自明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改革開放의 물결을 타고 법률제도의 현대화를 위하여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結實中의 하나가 전술한 法院組織法 제34조 제2항의 新設이다.

(2) 法官의 任命과 任期

地方各級人民法院의 院長은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가 선거한다. 地方各級人民法院의 副院長, 庭長, 副庭長과 法官(審判員)은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가 任免한다(법원조직법 제35조 제1항). 그리고 省안에 지역에 따라 설치된 中級人民法院이나 直轄市안에 설치된 中級人民法院의 원장은 省과 直轄市의 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하며 副院長 이하는 同人民代表大會의 常務委員會가 任免한다(동조 제2항). 民族自治地方에 설치된 各級人民法院의 원장은 그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하며 副院長 이하는 同 代表大會常務委員會가 任免한다(제3한). 最高人民法院의 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하며 副院長, 庭長, 副庭長은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가 任免한다(제4항).

各級人民法院 院長의 任期는 같은 級의 人民代表大會의 任期와 같다. 그러나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자기가 선출한 人民法院 院長을 罷免할 수 있으며, 인민대표대회가 회기중이 아닌 때에도 당해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 인민법원 원장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上級人民法院에 보고하여 당해 上級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의 비준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同法 제36조 제2항).

2 補助法官(助理審判員)

각급의 인민법원은 필요에 따라 補助法官을 둘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인민법원이 任免한다(제37조 제1항). 改正前의 法院組織法에는 보조법관의 임명권이 司法行政機關에 있었으나(由司法行政機關任免), 83년 개정으로 당해 法院에 任命權을 부여하고 있다.

36) 人民檢察院은 1978년 憲法에 의하여 다시 復活되었다

補助法官의 임무는 법관의 裁判을 補助하는 것이나, 法院長의 推薦과 裁判委員會의 승인을 얻어 臨時로 法官의 職務를 代行할 수도 있다(제2항).

3 人民陪審員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가진 만23세 이상의 公民으로 參政權이 박탈되지 않은 자는 人民陪審員으로 선출될 수 있다(제38조). 人民陪審員이 인민법원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동안은 그 참가하는 裁判庭의 構成員으로 되어 法官과 同等한 權利를 가진다(제2항). 그러나 上述한 바와 같이 陪審制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民事訴訟에서는 제1심에서만 任意的으로 採擇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人民陪審員이 직무를 집행하는 기간에 賃金은 그 所屬單位가 그대로 지급하며, 賃金收入이 없는 者인 경우는 人民法院이 적당한 보조를 지급한다(제39조).

4 書記員

各級人民法院에는 書記를 두어 법원의 기록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기타 재판 관련 사항을 처리케 한다(제40조)

5 執行員 等

地方各級人民法院에는 執行員을 두어 民事事件의 判決과 裁定의 집행사무를 처리케 하며, 刑事事件의 判決과 裁定 중 재산과 관련되는 부분의 집행사무를 처리케 한다(제 41조).[37]

地方各級人民法院에는 法醫를 두며, 각급의 인민법원에는 약간명의 司法警察을 둔다(동조 2,3항).

VI 중국의 辯護士(律師)制度

1. 中國 辯護士制度의 槪要

中國의 변호사제도는 1954년에 설립되었다.[38] 그러나 이 辯護士制度는 1957년부터 崩壞되기 시작하여 文化革命期間에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문화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후 1979년 부터 다시 회복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980년에는 中華人民共和國律師暫行條例가 제정되어 1982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되고 있으며 1990년 말의 全中國의 변호사 수는 38,769명에 달하고 辯護士 사무소의 수는 3,653개소에 달하고 있다.[39]

中華人民共和國律師暫行條例에 의하면 中國의 辯護士는 국가의 법률공무원이다. 辯護士는 국가사업단위인 法律事務所(法律顧問處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며 국가의 司法行政機關의 指導와 監督을 받는다(同 條例 제13조). 따라서 辯護士와

37) 中國에도 우리의 賠償命令(訴訟促進等에 관한 特例法 제25조 이하)와 같은 제도가 있다. 中華人民共和國刑事訴訟法 제53조 이하의 「附帶民事訴訟」이 그것이다. 즉 被害者가 被告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物質的 損害를 받은 경우에는 刑事訴訟의 과정중에 附帶民事訴訟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제53조 제1항). 만약 國家財産 혹은 集體財産이 損失된 경우에는 人民檢察院이 公訴提起時에 附帶民事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 경우 人民法院은 필요한 때에는 被告人의 재산을 封印(查封) 또는 押留할 수 있다(동조 제3항). 한편 附帶民事訴訟은 當該 刑事訴訟과 併合裁判(一并審判)하여야 하며, 刑事裁判의 過度한 遲延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이를 分離하여 刑事事件의 裁判後에 같은 재판기관이 계속하여 附帶民事訴訟을 裁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4조). 偶然의 一致인지 몰라도 우리의 賠償命令制度에도 慰藉料請求가 빠져있는데 中國의 附帶民事訴訟도 그 訴訟物을 物的損失에 限定하고 있다.

38) Huang Huikang, op.cit. PP.246.

39) 前揭, 「1991 中國法律年鑑」, 955面. 이 年鑑에 따라 좀더 자세히 辯護士와 辯護士機構의 現況을 본다면 다음과 같다.

辯護士事務所	辯護士業務者數			辯護士資格取得者	修習辯護士	特別邀請辯護士
	合計	區分				
		專職	兼職			
個	名	名	名	名	名	名
3,653	38,769	23,599	15,170	27,199	861	2,614

의뢰인의 관계는 사적인 위임관계가 아니며, 辯護士의 보수도 司法府가 일률적으로 정한다(동 조례 제20조).

2 辯護士의 任務와 機能

辯護士의 임무는 國家機關, 企業事業單位, 社會團體, 人民公司 및 公民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며, 법률의 정확한 실시를 도와 국가와 集體의 이익 및 公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제1조). 이러한 임무를 위하여
辯護士는 아래와 같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제2조).

(1) 法律顧問의 기능(제1호)

辯護士는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인민공사의 초청으로 法律顧問을 담당한다. 中國의 경제개혁의 深化에 따라 법률에 따른 각종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法律顧問을 고용하도록 요청하고 있다.[41] 辯護士는 法律顧問으로서 의뢰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며, 계약서등의 法律書類를 작성하거나 검토해 주며, 사업상의 교섭에도 참가하여 법률적 문제를 설명해 주고 調停이나 仲裁에도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한다.[42]

(2) 民事訴訟의 訴訟代理人의 기능(제2호)

민사소송의 당사자의 委託을 받아 訴訟代理人으로 民事訴訟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소송대리제도는 변호사대리원칙이 채택되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辯護士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43]

---

40) 同 條例 제1조.
41) Huang Huikang, op.cit. p.247.
42) Ibid.
43) 자세한 것은 孫漢琦, 前揭書, 113면 이하 參照.

(3) 刑事訴訟의 辯護人 등으로 참가한다(제3호)[44]

辯護士는 형사피고인의 委託 또는 법원의 指定으로 변호인이 되며, 自訴事件의 原告 또는 공소사건의 被害者 및 그 近親屬의 위탁에 따라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4) 非訟事件에의 참가(제4호)

非訟事件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법률적 도움을 주거나 대리인으로 調解와 증재활동에 참가한다.

(5) 法律問疑에 答辯을 해주고 訴訟文書 기타 有關法律事務의 문서를 작성한다(제5호)

3 辯護士의 資格과 種類

(1) 辯護士의 資格

中國의 辯護士 자격요건은 상당히 느슨하다. 이는 法官의 要件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상당히 오랜기간에 걸쳐 法律專攻者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사정과 최근 法曹人 需要의 急增에 起因하는 것이다.[45] 中華人民共和國律師暫行條例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을 熱烈히 愛好하고 社會主義制度를 擁護하며 選擧權과 被選擧權이 있는 公民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試驗(考核)에 합격한 자는 辯護士資格을 取得한다(제8조). 따라서 辯護士가 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資格을 가질 것과 試驗의 合格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資格要件

辯護士가 되기 위하여는 아래의 要件中의 하나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제8조).

(가) 大學校 또는 專門學校의 法律專攻의 卒業生으로 2년 이상 司法事務, 法律

44) 刑事訴訟의 法定代理人 및 委託代理人에 관하여는 前揭, 中國刑事訴訟法」, 29면 참조.
45) Huang Huikang, op.cit. p.249.

教育 또는 法學硏究에 從事한 자(제1호).

(나) 전문적인 法律訓練(專業法律訓練)을 받고 人民法院의 法官 또는 人民檢察院의 검찰관의 職을 맡았던 자(제2호).

(다) 綜合大學 또는 單科大學의 졸업자로 3년이상 경제, 과학, 기술분야에 종사하여, 자기의 전문분야 및 이와 관련된 法律, 法令에 精通한 者로, 전문적인 法律訓練을 받아 변호사업무에 종사함에 적합한 자(제3호).

(다) 기타 (가)와 (나)에 列擧된 자의 法律知識을 갖추고 대학수준의 교육정도를 갖춘자(제4호).

(3) 資格審査

이상의 요건을 갖춘자는 辯護士資格 申請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자는 국가의 司法府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이에 합격한 자는 省, 自治區, 直轄市의 司法廳(局)의 심사를 거쳐 辯護士 資格證을 발급받으며, 中華人民共和國司法府에 이를 登錄한다(제9조). 사법부는 심사비준이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司法廳(局)에 통지하여 재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同條 2문).[46]

이와 같이 자격을 얻은 자는 辯護士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런데 자격을 얻은 변호사가 본래의 職을 떠날 수 없는 경우에는 兼職辯護士(兼職律師)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兼職律師의 소속단위는 이와 같은 兼職活動을 支援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그러나 人民法院, 人民檢察院, 人民公安機關의 現職者는 兼職辯護士로 활동할 수 없다(제2항). 이에 대하여 변호사활동을 專業으로 하는 者를 專職辯護士(專職律師)라고 한다.

中國에는 修習辯護士(實習律師)제도가 있다. 즉 暫行條例 제13조에 따라 대학교 또는 專門學校에서 法律을 專攻한 자 또는 전문적인 법률훈련을 받은 자는 省, 自治區, 直轄市의 司法廳(局)의 審査批準을 거쳐 修習辯護士가 될 수 있다. 修習期間은 2년이며 이 기간이 끝나면 제9조의 절차에 따라 辯護士資格을 수여하

46) 辯護士의 資格試驗은 國家의 司法部가 통일적 실시하고 있으며, 1986년 부터 매2년 마다 統一的이고 全國的인 辯護士資格試驗이 실시되고 있다(Huang Huikang, op.cit. pp.249- 250; p.250,footnote).

며, 審査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修習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辯護士가 심히 그 職을 堪當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省, 自治區, 直轄市의 司法廳(局)의 결정을 거쳐 사법부의 비준을 받아 辯護士資格을 취소할 수 있다(제12조).

4 辯護士業務를 위한 機構

辯護士는 法律事務所(法律顧問處)에 소속되어 활동한다.[47] 법률사무소는 公的 事業單位로 국가의 사법행정기구로 부터 組織과 業務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는다(제13조 제2항). 사무소는 縣, 市, 市의 區에 설립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부의 비준을 받아 專門法律事務所를 설립할 수 있다(제14조).[48] 그리고 법률사무소간에는 隷屬관계가 없다(同條 제2항). 또한 이 사무소에는 主任 1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서는 副主任을 둘 수 있으며, 主任과 副主任은 모두 당해사무소 所屬辯護士가 選擧하여 省, 自治區, 直轄市의 司法廳(局)의 批準을 얻어 임명하며 任期는 3년으로 連任할 수 있다(제16조). 主任과 副主任은 법률사무소의 業務를 지도하며 반드시 辯護士의 職務도 수행하여야 한다(同條 제2항).

法律事務所의 주요업무는 辯護士의 業務를 指導하고 변호사의 政治, 法律知識의 學習을 담당하고 변호사의 업무경험을 總結, 交流하는 것이다(제15조). 또한 辯護士의 事件擔當은 법률사무소가 일괄적으로 위탁을 받아 배당하며 個別的으로 사건을 接受할 수 없다(제17조 제1항). 그러나 依賴人이 특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實際的인 條件을 참작하여 가능한 한 이를 만족시켜주어야 한다(同條 제2항). 법률사무소는 所屬辯護士를 자기 지역 밖에 파견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

47) 法律事務所와 法律顧問處를 구별하여 辯護士가 依賴人을 接見하고 委託節次 등을 하는 場所를 法律事務所라 하고 이를 指導監督하는 국가기구로서의 事業單位를 法律顧問處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는 양자를 區別하지 않는다.

48) 對外經濟事件을 위한 사무소 또는 涉外事件을 위한 사무소 등을 말하며 최근 이러한 專門化의 傾向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法科大學이나 政治法律學院 등에서도 당해 지역의 司法廳(局)의 승인을 얻어 자체적인 法律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私的인 法律會社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Huang Huikang, op.cit. p.251).

으며, 이 때는 現地의 法律事務所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제18조).

변호사의 權益保護, 實務經驗의 交流, 변호사업무의 발전, 국내외 법률종사자 간의 연계 등을 위하여 辯護士協會(律師協會)가 설립되어 있으며 모든 辯護士는 이 협회의 회원이 된다.

5 辯護士의 權利와 義務

辯護士가 법률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때는 국가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에 干涉할 수 없다(제3조 제2항). 반면에 변호사의 활동은 事實을 根據로 하고 法律을 그 規準으로 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사업과 人民의 利益에 充實하여야 한다(제1항). 이것이 辯護士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이다.

변호사가 소송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關係規定에 따라 사건의 자료를 閱覽할 수 있으며, 有關單位나 個人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어들은 이를 支援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辯護士가 刑事事件의 辯護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被告人을 接見할 수 있으며 피고인과 통신할 수 있다. 또한 被告人이 事件의 情況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辯護를 拒絶할 수 있다(제6조 제2항). 반면에 辯護士는 업무활동중에 知得한 國家機密이나 個人의 私生活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제7조 제3항). 또한 辯護士는 事實을 歪曲하거나 私的으로 사건을 접수하거나 依賴人으로 부터 私的으로 報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6 辯護士費用 徵收制度

暫行條例 제17조와 제20조를 근거로 1981년 12월 9일 {律師收費試行辦法}이 司法部와 財政部의 合同으로 공포되었다. 이에 따르면 모든 변호사비용은 법률사무소가 徵收하며(제2조 제2항), 비용은 사무의 煩雜程度, 所要時間의 長短 訴價의 多寡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49]

國家機關, 企業事業單位, 社會團體, 人民公司가 辯護士를 기간을 정하여 法律顧問으로 招聘하는 경우에는 法律事務所가 쌍방간의 계약에 따라 費用을 徵收한다. 그리고 辯護士가 法律顧問을 하고 있는 기간에 초청한 단위를 위하여 대리인으로 訴訟, 調解, 仲裁에 참가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가 이 辦法에 규정된 徵收標準에 따라 다시 別途로 비용을 徵收한다.

특히 복잡한 民事,刑事事件, 非訟事件 등의 경우는 徵收標準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는 倍를 넘지 못한다. 訴價가 비교적 다액이고 사건의 정황이 比較的 複雜한 경우에는 규정된 표준액 이외에 委託人과 상의하여 增額할 수 있다. 또한 辯護士가 外地에 나아가 활동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액수 이외에 宿食費, 交通費 등을 추가로 徵收한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辯護士 비용이 減免된다(제9조).[50]

---

49) 律師收費標準表와 계산방법등에 관한 설명이 添附되어 있으며, 10개조로 되어 있음.

50) 제9조에 의하면 (1) 公傷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를 하는 경우(有責的 事故는 제외), (2) 享受扶養, 卑屬扶養의 扶養料를 청구하는 경우로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경우, (3) 勞動保險金, 撫恤金 등의 救濟費를 청구하는 경우, (4) 非財産關係的인 간단한 諮問, (5) 당사자의 職場, 도시의 事務所 또는 農村人民公司가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負擔能力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6) 기타 特殊한 事情으로 減免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